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11. 18.(수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김광림, 서기관 김학원, 주무관 임대한 ·☎ (044) 201-3509, 3546
보 도 일 시		2020년 11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

### -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폐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 조사와는 별도로,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,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.
-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,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·소재지 변경 업체,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 시스템\*에 새롭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.

\* 건설업체, 재무정보, 기술인,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, 부실·불법·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

○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(20% 내외)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.

-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, 자본금 미달 10건, 사무실 기준 미달 1건,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,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(폐업신고) 13건으로 나타났다.
-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·도 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(1억 원 이하) 또는 영업정지(6월 이내), 등록말소(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) 처분을 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“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폐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서기관(☎ 044-201-35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1**

**특별실태조사 결과**

지 역	조사 대상업체	적격 업체	부적격업체				
			등록기준 미달				자료미제출 (조사기간 중 등록말소 포함)
			계 (중복제외)	자본금	기술능력	사무실	
계	197	129	25	10	18	1	43
서울	40	22	6	3	4	1	12
부산	6	5	1	1	0	0	0
대구	4	3	0	0	0	0	1
인천	15	11	1	1	0	0	3
광주	8	6	2	0	2	0	0
대전	1	1	0	0	0	0	0
울산	1	0	0	0	0	0	1
경기	80	50	10	2	9	0	20
강원	5	5	0	0	0	0	0
충북	1	1	0	0	0	0	0
충남세종	9	6	3	2	1	0	0
전북	4	4	0	0	0	0	0
전남	2	2	0	0	0	0	0
경북	5	2	2	1	2	0	1
경남	8	8	0	0	0	0	0
제주	8	3	0	0	0	0	5

\* 자본금, 기술능력 4개 업체 중복

## 참고 2

## 종합건설업 등록기준

업 종	기 술 능 력	자 본 금		시 설 · 장 비
토목건축공사업	-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	법인	8.5억원이상	사무실 보유 (법정 면적 규정은 없음)
	-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	개인	17억원이상	
	- 위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총 11인 이상			
토목공사업	-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6인 이상	법인	5억원이상	
		개인	10억원이상	
건축공사업	-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	법인	3.5억원이상	
		개인	7억원이상	
조경공사업	-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(국토개발분야 불인정-도시계획, 응용지질, 지적, 지질 및 지반등)	법인	5억원이상	
	- 토목분야 기술인 1인 이상	개인	10억원이상	
	- 건축분야 기술인 1인 이상			
산업·환경설비 공사업	- 기계, 금속, 화공, 세라믹, 전기, 전자, 통신, 토목, 건축, 광업자원, 정보처리, 국토개발, 에너지, 안전관리, 환경, 산업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중급이상 기술인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초급기술인 이상 총 12인이상	법인	8.5억원이상	
		개인	17억원이상	

\*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참조